

의료인을 위한 호흡기 감염예방 수칙

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 등 신종호흡기감염병 환자 진료 시 의료진 감염을 막기 위해 반드시 다음의 호흡기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

- ▶ 환자 진료 전·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을 시행합니다.
- ▶ 환자 진료 시 N95 이상의 호흡마스크, 고글 또는 안면부 가리개 및 1회용 가운을 착용하고, 체액이나 분비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갑을 착용합니다.
- ▶ 체온계, 청진기 등 환자 진료도구는 매 회 사용 후 소독합니다.
- ▶ 병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병원 내 감염관리 원칙에 따라 처리합니다.
- ▶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입원 치료는 음압격리병상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관리합니다.

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 의료인 감염예방 수칙



(360-951)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

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, 감염병감시과,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바이러스과

질병정보

- ▶ **질환명** : 중동호흡기증후군(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, MERS)
- ▶ **병원체** :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
(MERS-CoV,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– Coronavirus)
- ▶ **잠복기** : 9-14일로 추정

임상적 특성

- 발열, 기침,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한 중증 호흡기 질환으로 설사, 신부전을 동반하는 사례가 많음
- 바이러스 확산(Viral shedding) : 증상 발생 15일까지 점진적으로 증가. 20일 이후로는 없거나, 매우 감소
- 진단검사시 하기도 검체 필요(하기도 검체(Bal or Sputum)에서의 양성률이 높고 상기도 검체(Nasopharyngeal swab)의 경우 양성률이 매우 낮음)
- 다른 바이러스와의 동반 감염(co-infection) 사례가 확인되는 바, 다른 바이러스 감염 의심 시에도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의 가능성을 염두해야 함



감염원 및 감염경로

- 정확한 감염원과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, 중동지역(사우디아라비아, 카타르, 요르단, UAE)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
- 가족, 의료진 등 확진 환자와의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서 사람 간 감염 추정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음

* 환자 진료 시 접촉, 비말, 공기매개 주의 지침 준수 필요

중동 호흡기 증후군(MERS) 진단 및 신고기준

- ▶ **신고범위** : 의사환자, 환자
- ▶ **신고시기** : 지체없이
- ▶ **신고를 위한 진단기준**

- 환자(Confirmed Case)
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실험실적으로 확진된 사람
- 의사환자 (Probable Case)
임상적, 방사선학적, 조직·병리학적으로 폐실질 질환 (pulmonary parenchymal disease : 예를 들어 폐렴 또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)이 있는 급성 호흡기 감염자 (acute respiratory infection)로 다음의 특성*에 부합한 재단, 다른 감염에 의한 것 또는 다른 병인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)

*특성

- 발병 전 14일 이내에 아라비아반도 및 인근국가 여행 또는 거주하였던 자 또는
- 원인 불명의 중증 급성 호흡기질환자(특히 ICU)를 돌본 의료인 또는
- 발병 14일 이내에 증상이 있는 확진 또는 의사환자와 밀접한 접촉**을 한 자

**밀접한 접촉

- 확진 또는 추정사례를 돌본 사람(의료인, 가족 포함)
- 환자 및 의사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동일한 장소에 머문 사람(동거, 방문 등)

- ▶ **신고방법** : 지정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및 웹(<http://is.cdc.go.kr>) 등의 방법으로 신고

※ 제4군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선택하고 [증상및징후란]에 중동호흡기증후군 입력

▶ 검체의뢰

- 검체종류 : 폐포세척액(또는 객담) 및 혈액 5mL 이상
- 의뢰방법 : 의사환자 신고기준에 부합한 사례에 대한 검사 의뢰시, 보건소를 통하여 의뢰서와 함께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 호흡기바이러스과(043-719-8234)로 검체 송부